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김종무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최근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는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비실 에어컨 등 추가로 설치된 휴게시설들이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, 정책 추진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구시대적 기준을 바로 잡고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
건폐율·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
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관리사무실 항목에
‘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게·경비 시설’을 추가하는 것으로,
공동주택 단지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
불합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